

[2010. 4.29] [2010-9 , 2010. 4.28,]

()042 - 481 - 5394

1 () 「 」 61 , 「 」 15 , 「 」 9 10 「 」 5 6 .

2 ()

1. " " (' 99. 6. 30. ' 06. 10. 1. .) .

2. " 3 " (.)

3. < >

4. ' , 「 」 2 3 .

3 ()

. , 4 2 가 (.) .< 2008. 9. 30>

4 () 가

1. 3 가

2. 가

가

가. 「 」 34 , 39 , 27

28

(1) 「 」 32 19

(2) 「 」 32 19

(3) 「 」 31 가

(4) 「 」 29 16

(5) 「 」 34 22 .

(6) 가

.

. 가 (「 」 .
「 」 11 1 .
.) < 2008. 9. 30 >

. 「 」 25
「 」 15 ()
1)

. 가
가

(1) 「 」 2 < 2008. 9. 30 >

(2) 「 」 10 1

(3) 「 」 12

(4) 「 . . 」 11 .

(5)

(6) 「 」 8

(7)

(8) 「 」 11 가

(9) 가가

. 가 「 」 16 18
「 」 6 9

. 가
가
.
「 」 6 .
1 .
)

「 」 2

- (1)
- (2)
- (3)
- (4)

2
 「 」 36 8 가

「 」 26 가
 < 2008. 9. 30 >

가

- (1) 「 」 2 3 ,
- (2) 「 」 2 7
- (3) 「 」 2 6
- (4) 「 」 2 , 5
- (5) 「가 」 2 3 ,
- (6) 「 」 2 3
- (7) 「 」 2 , ,

3. (' ') PCT
 , (PCT)

가.

·
 ·
 ·
 ·
 ·
 ·

4. 가 58 1
(')
1 4 ()

5 ()

.< 2008. 9. 30>

1. 「 」 22 ' (" ")
(가)

가. 1 ()

2. 1 () 「

」 1 2

1 1 「 」 7

() (,)

가 1

1 4 2 4

4

6 () 4 1

3 가

4 2

5

4 3

2

3

4 4

5 1 1

7 [2006 · 9 · 29]

8 () 「 」 . 」 (248)

2012 8 24

. [2009.8.24]

< 0 ,2010. 4.28 >

() 2010 4 29 . , 4 3 2010 7 1

()

[별표]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신청이유		증빙서류
제3자실시 출원		제3자가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진, 카탈로그 등)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제4조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녹색기술 인증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녹색인증 신청을 위한 기술 설명서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서
	녹색전문 기업확인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발명과 녹색전문기업의 주 업종이 일치함을 입증하는 서류(녹색 인증을 위한 기술(사업)설명서, 매출비중 내역서 등)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조금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의 지급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녹색산업 투자회사 투자	녹색산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대출실적서 등)
	집적지 및 단지	출원인이 집적지 및 단지 내 입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기타 금융지원 인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국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기술개발 사업 선정 공고 등) 2. 금융기관으로부터 녹색기술과 관련된 금융지원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대출실적서 등) 3. 환경마크 인증서, 탄소성적표시 인증서, 신기술인증서, 기술검증서(발행기관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우수재활용제품인증서(발행기관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5. 기타 국가의 지원 정책과 연계되어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수출실적 입증서류 2. 신용장내도 입증서류 3.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필요하다는 수출품 구매자로부터의 요청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수출계약 입증서류 5. 국제표준의 채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수출촉진에 기여함을 입증하는 서류 6. 기타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벤처기업의 출원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발명과 벤처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업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예 : 사업자등록증 등) 2. 벤처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인 경우

	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국가의 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제4조제2호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국가의 품질인증 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제4조제2호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특허청에 제출한 출원서 사본 등)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인 출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된 발명이 실시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실시품 사진,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등) 2. 실시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공급계약서, 공장등록증 등)
출원인이 업으로서 실시 준비중인 출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된 발명이 실시준비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시제품 사진, 견본, 카탈로그 등) 2. 실시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 가.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나.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다. 출원기술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라. 기타 업으로서 실시준비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출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발명과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업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예 : 사업자등록증 등) 2.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확인서
특허청장이 일본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할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특허출원과 관련되어 외국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로부터 입수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	다음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제1호부터 제2호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생략 이유를 기재하고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선행기술조사결과 보고서 사본 2. 상기 선행기술조사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선행기술문헌의 사본 3. 특허출원된 발명과 상기 선행기술문헌에 기재된 발명과의 구체적인 대비 설명서
특허청장이 상대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할	다음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제1호부터 제3호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생략 이유를 기재하고 제출 생략 가능)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해당 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상대국 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특허심사하이웨이)	1.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상대국 특허출원의 특허청구범위 사본 및 번역문(상대국 특표청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심사관련통지서의 대상이 된 특허청구범위를 말한다) 2. 해당 특허출원에 대한 상대국 특허청의 심사관련통지서 사본 및 번역문 3. 심사관련통지서에서 인용한 선행기술문헌 사본 4. 특허출원의 모든 청구항과,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상대국 특허출원의 청구항과의 대응관계설명표
---	---

전자문서로만 이용가능
 [별지 제1호서식]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출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제출할 서류】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첨부서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기재요령

1. 【제출인】 , 【대리인】 및 【출원번호】 란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기재요령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2.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란은 필요한 경우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기재요령 제5호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3. 【제출할 서류】 란에는 제출하는 서류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 벤처기업확인서 1통
4. 【첨부서류】 란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기재요령 제8호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서 면

[별지 제5호서식]

【서류명】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선행기술조사】

【검색방법】

【검색DB】

【검색어】

【검색IPC】

【검색결과】

【선행기술과의 대비설명】

청구항	선행기술 문헌명	대비 설명		
		유사점	차이점	대비 판단

【우선심사 신청이유】

(【출원 발명이 실시(준비) 중인지 여부】)

(【실시(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출원 발명이 인증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기재요령

1. 【선행기술조사】란에는 신청인이 선행기술을 검색한 방법 및 결과를 기재합니다. 선행기술 문헌 검색은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http://www.kipris.or.kr>)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사한 선행기술문헌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검색 사이트 및 검색 DB[예 : IPLD(<http://www.ipdl.inpit.go.jp>), Naver(<http://www.naver.com/>), Google(<http://www.google.co.kr>), NDSL(<http://www.ndsl.kr/index.do>), RISS(<http://www.riss4u.net/index.jsp>)] 등을 활용합니다.

가. 【검색방법】란에는 신청인이 선행기술문헌을 검색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 아래에 【검색DB】, 【검색어】, 【검색IPC】란 등을 만들어 구체적인 검색 방법을 적습니다.

예) 【검색방법】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http://www.kipris.or.kr>)에서 검색

【검색DB】한국 특허문헌, 미국특허문헌, 일본특허문헌

【검색어】핸드폰, 케이스, 슬라이드

【검색IPC】H04B, H04L

나. 【검색결과】란에는 신청인이 검색한 선행기술 문헌 중 출원 발명의 청구항 전체와 비교하여 찾아낸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문헌(4개이상)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예) 1. 공개특허 제00-00000호(19xx.x.x.)

2. 미국특허 제00000000호(19xx.x.x.)

3. 일본특허공고 평00-000000호(19xx.x.x.)

4. 19xx.x.x. 사단법인 대한화학회 발행, 대한화학회지, 제0권, 제0호(제0면 내지 제0면)

2. 【선행기술과의 대비설명】란에는 출원 발명의 청구항과 선행기술문헌과의 대비 설명을 아래 대비표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대비표에는 전체 청구항 중 하나의 청구항과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 문헌을 선정하고 선정된 선행기술 문헌과 해당 청구항과의 유사점, 차이점 및 대비 판단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가. 유사점 칸에는 해당 독립항과 유사한 기술적 구성이 기재되어 있는 선행기술문헌의 해당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당 쪽/행 등)합니다.

나. 차이점 칸에는 해당 독립항과 선행기술 문헌간에 기술적 구성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다. 대비 판단 칸에는 유사점, 차이점에 기초하여 해당 독립항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였는지, 선행기술문헌에 비해 얻을수 있는 유리한 효과가 무엇인지 등을 기재합니다.

라. 독립항에 대한 대비표는 반드시 작성하되 종속항에 대한 대비표의 작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선행기술 문헌명	대비 설명		
		유사점	차이점	대비 판단
1	문헌1	문헌1(3p)	청구항 1항의	차이점에서 나타난

		10줄~20줄)의 O000와 청구항1항의 △△△△가 실질적으로 대응	구성요소 xxx, xxx는 문헌1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	구성요소 xxx, xxx를 통해 O000 라는 본원 발명이 해결하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음
5	문헌2	문헌2(fig1)의 O000는 청구항1항의 △△△△에 대응됨	문헌2(fig1)의 O000는 청구항1항의 △△△△의 상위 개념	문헌2의 O000를 본원 발명에서는 구성요소 △△△△로 한정하여 XXXX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10	문헌3	O000	O000	O000

3. 【우선심사 신청이유】란에는 출원 발명이 우선심사의 신청 대상이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 본 발명은 O000에 관한 것으로, 증빙서류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O0000에 관한 것이므로 O00법시행령 제X조X호 및 고시 제4조제X호X목에 해당합니다.

가. 고시제4조제2호자목(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또는 실시 준비중인 출원)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원 발명이 실시(준비) 중인지 여부】란과 【실시(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만들어 출원된 발명이 업으로서 실시 또는 실시 준비중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출원 발명이 실시(준비) 중인지 여부】란에는 별표의 증빙서류(제품 또는 시제품의 사진, 카달로그, 모형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실시 발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실시주체, 실시기간, 실시장소, 실시 조건 등)를 출원 발명과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예) 본 출원의 출원인은 출원 발명과 대응되는 시제품을 O000 소재 본 출원인의 사업장에서 xx.xx.xx자로 생산하였으며, 증빙서류1(시제품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3(시제품 사진)에 표시된 구성 1 내지 5는 출원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 A 내지 E에 대응됩니다.

(2) 【실시(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란에는 출원 발명과 관련된 업종에서 업으로서 실시(준비) 중인 상황을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기재합니다.

예) 본 출원의 출원인은 증빙서류2(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출원발명과 동일한 기술분야에 있는 장치A에 관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증빙서류3(매출실적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실시 발명에 대한 상당액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출원 발명은 업으로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나.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INNO-BIZ) 또는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임을 이유로 우선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원 발명이 인증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란을 만들어 출원발명과의 업종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예) 본 인증 기업 A사는 증빙서류1로 제출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카메라 및 방송장비 제조업이 주업종인 기업으로 본 출원 발명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고화질 CCTV와는 매우 기술적 관련성이 높으므로 업종 관련성이 있습니다.